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구매를 권고받았을 때,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하도록 하고,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용협약자 요건과 신청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안 제99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구매하도록 권고했을 때,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하도록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제도 운영(안 제99조제3항 및 제8항, 제99조의2)

1) 교통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 :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

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주체의 확대 :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 발생 시 활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 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도 포함하도록 함.

3)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타 업체도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로서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도록 함.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서류 :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규정하도록 함.

다. 권한 위탁 규정(안 제114조의2제5항제6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운영절차(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07. ~ 8. 16.)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심사 요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로, “구입”을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교통신기술개발자”를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02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교통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0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교통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4조의2제5항제5호 중 “영 제99조제7항”을 “영 제9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02조의2 및 이 영 제99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u>구입</u> 하여야 한다.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u>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u> ---.
<u><신 설></u>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경우 <u>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02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u>

③ ~ ⑥ (생략)

⑦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신 설>

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99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

0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교통신기술 시공에 필

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

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

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02조의2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102조 및 이 <u>영 제99조</u>	1. <u>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u> 2. <u>건설업 등록증 사본</u> 3. <u>교통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u> 4. <u>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u> 5. <u>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영 제99조</u>
--	---

<u>제7항</u>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관 리에 관한 업무 <u><신 설></u> ⑥ (생 략)	<u>제8항</u>----- ----- ----- 6. <u>법 제102조의2 및 이 영 제99 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 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 한 업무</u> ⑥ (현행과 같음)
--	---